과세대상자산 세율 2013.1.1.∼ 2013.12.31. 양도 자산 2014.1.1.∼ 2020.12.31. 양도 자산 2021.1.1. 이후 양도 자산 (1) 비사업용 토지 30% (미등기 40%) 10% (미등기 40%) 10% (미등기 40%) (2) 주택, 별장 20% (미등기 40%) (3)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 - 20% \* 舊 법인세법§25①(1)에 따른 중소기업이 (2)주택 또는 (3)비사업용 토지(미등기 토지등은 제외한다)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지 아니함(법인세법 부칙 제8조 단서, 법률 제12166호, 2014.1.1.). \* 하나의 자산이 둘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 \* 법인의 주택, 별장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세율(10%~25%)에 추가하여 적용하는 세율을 10% → 20% 인상 (’21년 양도분부터) \* 법인의 조합원입주권, 분양권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에 포함, 기본세율(10%~25%)에 20%를 추가 적용 (’21년 양도분부터)